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8. 12. 20.(목)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전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72(서)-587)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8.9.28 공포·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 허가 관련 서식 변경 등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8-72(서)-588~595)

- 「방송법」 제73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케이엔엔 등 8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케이엔엔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500만원
(주)티비씨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500만원
(주)울산방송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500만원
(주)대전방송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500만원
푸른방송(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000만원
제이티비씨(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주)한국뉴시체널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4항제2호	3,000만원

다.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8-72(서)-596~599)

-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	350만원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주)현대에이치씨엔 부산방송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제1호	350만원
(주)화진방송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1,015만원